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증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995. 8. 25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95. 8. 17 영등포구청장 제출

나. 회부일자: '95. 8. 17

다. 상정일자: 제36회 영등포구의회(임사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95. 8. 25)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총무국장 윤정중)

가. 제안이유

'95. 10. 1부터 일반여권 발급업무를 자치구에서 대행하게 됨에 따라 업무추진에 필요한 기구신설 및 업무를 규정하여 일반여권 발급대행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음.

나. 주요골자

○여권과 기구 신설→1과 3계

○여권과 분장사무 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허영훈)

'95. 10. 1 부터 외무부의 일반여권 발급업무를 자치구에서 대행하게 됨에 따라 우리구의 업무추진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를 규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 제6조(총무국)란을 개정하는 것으로써 제6조 제1항을 개정하여 총무국 내에 여권과를 신설하고 제6조에 제7항을 신설하여 여권과의 분장사무를 아래 각호와 같이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여권과 분장사무

- ①여권 민원업무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②여권발급 신청접수 및 심사에 관한 사항
- ③여권제작·교부에 관한 사항
- ④여권발급 대행업체 관리에 관한 사항

이는 서울시 일반여권 발급업무대행세부시행계획(시민 29400-791 '95. 8. 8자)에 의거 '95. 10. 1부터 일반여권 발급업무를 우리구에서 대행하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여권 발급업무수행을 위한 필요기구를 조례로 신설하기 위한 것이므로, 업무대행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사전조치인 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원안의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2
----------	----

제출년월일 : 1995. 8. 17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95. 10. 1부터 일반여권 발급 업무를 자치구에서 대행하게 됨에 따라 업무추진에 필요한 기구신설 및 업무를 규정하여 일반여권 발급대행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음.

2. 주요골자

- 여권과 기구 신설→1과 3계
- 여권과 분장사무 규정

3. 개정근거

○일반여권 발급업무대행 세부시행계획 시달
→시민 29400-791('95. 8. 8)

4. 개정조례(안) : 따로붙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하고 동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총무국에 총무과, 기획예산과, 국민운동지원과, 생활체육과, 민방위과 및 여권과를 둔다.

⑦여권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여권 민원업무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여권발급 신청 접수 및 심사에 관한 사항
3. 여권 제작·교부에 관한 사항
4. 여권발급 대행업체 관리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95. 10. 1 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총무국) ①총무국에 총무과, 기획예산과, 국민운동지원과, 생활체육과 및 민방위과를 둔다.</p> <p>②~⑥ 생략 (신설)</p>	<p>제6조(총무국) ①총무국에 총무과, 기획예산과, 국민운동지원과, 생활체육과 민방위과 및 여권과를 둔다.</p> <p>②~⑥ 현행과 같음</p> <p>⑦여권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여권 민원업무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p> <p>2. 여권발급 신청접수 및 심사에 관한 사항</p> <p>3. 여권 제작·교부에 관한 사항</p> <p>4. 여권발급 대행업체 관리에 관한 사항</p>